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번호	173
----------	-----

제안연월일 : 2014. 11. 26.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공통서식 마련을 위하여 의회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해관계 직무회피 소명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2조)
- 나. 국내외 활동 사전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3조)
- 다. 국내외 활동 보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4조)
- 라.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5조)
- 마.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6조)
- 바. 금전거래·부동산대여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7조)
- 사. 위반행위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8조)
- 아. 금품 등의 반환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9조)
- 자. 금품 등 접수처리 기록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별첨(12~13쪽)
- 나. 비용추계서 : 미첨부(규칙 제정으로 인한 예반수반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관계 직무회피 소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회피에 대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사전 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국내외 활동 보고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활동 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영리행위 신고) 조례 제15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금전 거래·부동산대여 등 신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금전 거래·부동산대여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위반행위 신고) 조례 제19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공받은 금품 등의 반환에 따른 비용 청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금품 등 접수처리 기록)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금품 등 접수 처리 등의 기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회피직무	<input type="checkbox"/> 의안 심사 <input type="checkbox"/> 예산 심의 <input type="checkbox"/> 행정감사·조사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회피원인	<input type="checkbox"/>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 명 내 용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20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소 명 자 (서명) </div>			

[별지 2호 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0 신청자 (서명)						

[별지 3호 서식]

국내외 활동 보고서

국내외 활동 보고서				
활동 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위원회
개요	목 적			
	지 원 기 관 (단체)		지 원 받 은 내 역	
	기 간		방 문 지 역 (방문기관)	
주요 활동 내역 <small>(일정 또는 활동내역별)</small>				
<p>인천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자 (서명)</p>				

[별지 4호 서식]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외부강의 및 회의 유형	<input type="checkbox"/> 교육과정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input type="checkbox"/> 회의 <input type="checkbox"/> 기타()			
활동 유형	<input type="checkbox"/> 강의, 강연 <input type="checkbox"/> 발표, 토론 <input type="checkbox"/> 심사, 평가, 자문, 의결 <input type="checkbox"/>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소				
일시	20 ~ 20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시 분 ~ 시 분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 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5호 서식]

영리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선거구분	지역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황	명칭				
	직위		영리행위기간		
	보수	(택) 연월원원	전화번호		
	영리장소 (주소)				
기타					
<p>인천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 . . .</p> <p style="margin-left: 100px;">신고자 (서명)</p>					

[별지 7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0 신고자 성 명 (서명)				

[별지 8호 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 당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div style="text-align: center;"> <p>20</p> <p>청 구 자 (서명)</p> </div>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3조(의회규칙) <p><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적용 범위 등) ○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p><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사항 별지 참조”</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은 의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